

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 <p style="margin: 0;">2012. 9. 24.</p>	 <h2 style="margin: 0;">대 법 원</h2> <p style="margin: 0;">Supreme Court of Korea</p>	
	담당부서	사법등기국
	담당자	사법등기심의관 정영식(☎ 3480-1374)
	공보관실 ☎ 3480-1451	

미국 · 중국 · 영국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

- 2012년 9월 25일부터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미국, 중국, 영국으로 확대 실시

□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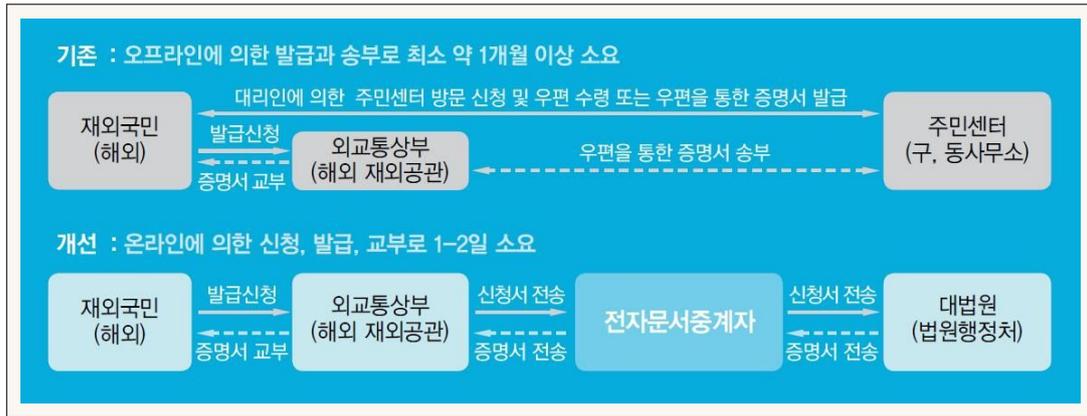
- 대법원과 외교통상부는 종전 호주(주시드니총영사관), 브라질(주상파울루총영사관), 태국(주태국대사관) 3개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던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, 2012년 9월 25일부터 미국(전 공관), 중국(전 공관), 영국(주영국대사관) 등 5개국 24개 공관으로 확대하여 실시함

□ 공인전자우편 방식의 재외공관 증명서 발급서비스

- 종전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외공관이 우편을 통하여 증명서 발급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
- 우편에 의한 증명서 발급이 시간적·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재외국민을 위하여 대법원과 외교통상부는 2012년 4월 30일부터 「공인전자주소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서비스」(샵·#메일) 방식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을 도입하여 호주(주시드니총영사관), 브라질(주상파울루총영사관), 태국(주태국대사관)의 3개 공관에서 재외국민의

편의를 도모하고 있음

- 9월 25일부터는 미국(12개 전 공관), 중국(6개 전 공관), 영국(주영국대사관), 호주(주호주대사관) 및 브라질(주브라질대사관) 5개국 24개 공관으로 추가 확대하여 재외국민 약 160여만 명이 편리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



## □ 기대효과

-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의 신청과 수령까지의 기간이 1~2일 정도로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3달러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